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February 27, 2023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을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KPMG report: Changes to Brazilian transfer pricing and royalty deduction rules](#)

2022년 12월 28일,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이전가격체계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Provisional Measure(이하 “잠정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브라질이 기존 적용해온 공식 기반의 독자적인 이전가격세제에서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정상거래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브라질 기업 간 국외특수관계거래에 대해 새로운 이전가격세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2023 사업연도부터 해당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라질 이전가격세재에는 아래 OECD 이전가격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전가격 산정방법 및 평가방법
- 브라질에서 수행된 거래와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 분석 가능성

- 
- OECD 비용분담약정의 개념
  - 내부 구조조정을 다루는 규정
  - OECD의 금융거래 관리 기준
  - 브라질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및 상호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
  -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포함한 BEPS Action 13 의 이전가격 문서화 요구사항

해당 잠정조치는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이전가격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로열티 공제에 대한 중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20 세기 중반부터 국외 주주에게 지급된 로열티의 비공제 또는 해외법인에게 지급한 로열티 및 기술지원료에 대한 공제한도(예, 순매출의 1%~5%)와 같이 로열티 공제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전가격체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제한규정들은 적용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인 제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종 입법 단계에서 잠정조치의 조항들을 시행하는 경우, 브라질 기업은 조세 피난처 관할국가의 거주자 또는 이중비과세 목적의 로열티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 의회는 잠정조치를 발표한 날로부터 120 일 이내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의회가 잠정조치를 전면 승인할 경우 'conversion law(이하, "전환법")'가 제정되며, 2022년 12 월 29 일부터 새로운 이전가격세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영국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1 사업연도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 관련 통계자료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이하 "HMRC")은 2022년 3 월 31 일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전가격 및 우회이익세 관련 연간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통계자료는 HMRC의 이전가격 위험 관리 지표를 제공하며 최근 발표된 자료에서는 몇 가지 흥미로운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 관련 추가세수는 1,482 백만 파운드(약 2조 3천억원)로 31% 감소하였습니다.
- HMRC는 198 백만 파운드(약 3,100억원)의 우회이익세를 거두었으며, 이는 2018 사업연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 HMRC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175건의 이전가격 조사 건들을 해결하였으며, 해당 사례들을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개월이었습니다.
- HMRC는 131건의 이전가격 관련 상호합의의 절차 사례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는 HMRC에 있어 지난 몇 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변화이며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 40건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s, 이하 "APA") 신청서가 신규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6 사업연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 APA 합의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최근 합의된 20건의 APA 사례가 평균 5년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HMRC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으로 향후 APA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1 서 2808, 2022.12.05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상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 [쟁점]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임플란트 제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에 적용한 정책보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법인 외 해외판매법인에 적용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이하 "해외판매법인")에 임플란트 완제품 및 치과용 기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정책보고서를 구비하고 있고, 2014~2018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 중 일부 해외 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책 보고서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상회 또는 하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추가적인 보상조정을 시행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2019.5.21.부터 2019.9.8.까지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9.9.17. 해외판매법인 중 ○○○(이하 "○○○법인")에 대해 정책보고서 정상가격을 상회하는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함
  - 청구법인은 2020.3.30. 쟁점사업연도에 대해 ○○○법인 외 해외판매법인에 대하여도 정책보고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1.1.5. 그 외 해외판매법인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 심판청구를 제기
-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주장   |
|---|--|
| 1) 경정청구 대상인 해외판매법인은 처분청이 이전가격 과세처분 한 ○○○법인과 설립목적, 사업 내용,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 이전가격 정책 등이 동일하며, 국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처분청이 ○○○법인에 적용한 정책보고서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br>2) 해외판매법인들의 설립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해외판매법인이 기록한 영업손실은 청구법인과의 이전 가격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해외판매법인 간 재화거래는 이전가격 조정대상 거래에 해당함 | 1)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국외로 소득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가격 조정은 불요하고 확보된 과세권에 반하여 능동적으로 일련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나 강제성은 없음<br>2)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이상 이월익금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이종비과세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

|   |   |
|---|---|
| <p>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시 제시한 비교대상기업은 권역별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기능의 유사성 측면에서 비교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이나,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비교대상기업을 다시 선정하더라도 해외 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범위를 하회함</p> | <p>3)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손실은 초기 시장침투전략에 따른 매출규모 미성숙, 판관비 및 시술교육 비용과 더, 본사의 판매가격 할인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제품 이전가격에서 기인하지 않았음<br/>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교대상업체는 권역별로 선정되었다는 점, 해외판매법인의 특수한 원가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경정청구를 통해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면 이에 따른 입증책임은 1차적으로 청구법인에 있는 바, 처분청이 ○○○법인에 한하여 적용한 방법과 비교대상업체를 이와 무관한 아시아, 미주권역 현지법인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p> |
|---|---|

### - 판단

-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법인과 해외 판매법인은 설립 목적, 운영 사업, 취급 재화, 이전가격 거래에서의 수행 기능·부담 위험·사용 자산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을 선정하고, 정책보고서 상 지역별 비교대상기업의 2014~2018 사업연도 재무자료를 기초로 각 지역·연도별 영업이익률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여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2014~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일반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먼저 자신이 당초 신고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외에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
-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 상의 해외판매법인 기능위험 분석 및 법인 성격 규명, 정상가격 산출방법, 비교대상기업 선정과정 및 선정된 비교대상기업의 적정성,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손실)률 및 원인 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시받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상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03 관세

### 인도 국세정보국(DRI)의 관세조사 증가

#### 1) 배경

- 무역 수지 불균형 및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한 인도 정부 재정적자 악화로 인도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 확대 추세
- 전품목 비대면 통관(Faceless Assessment) 제도 시행 후 對인도 수출제품 대상, 인도 세관의 품목분류 불일치 이슈 증가
  - \* 한-인도CEPA·인도-아세안FTA 활용 혹은 저관세 수입 제품에 대해 원산지 불인정 또는 고관세 HS 코드 적용 주장

#### 2) 관세조사 세부 사항

- 인도 국세정보국(DRI)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현재 수입하고 있는 HS 코드가 아닌, 그보다 높은 세율의 HS 코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차액 추징 시도
- 그러나, 확실한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 판례나 WCO 품목분류 의견서를 바탕으로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 추징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 사례 다수 발생 중.
- DRI의 사전고지 없는 일방적인 관세조사로 인해 기업들이 사전에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 불가
- 관세 차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출고 금지 명령 및 관세 차액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5년간의 관세차액 소급 징수, 종합 세액 심사, 수입품 전수검사·압수 등을 수행

#### 3) 예상 피해 및 애로 사항

- 최근 2년간 (고의성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간) 수입한 물품에 대해 다른 HS 코드를 소급 적용·추가 징수할 경우, 예상치 못한 고비용 지출
- 공탁금 기금 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후에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소송 진행 경우 많은 시간 및 비용 부담

- 소송을 하지 않고 관세 차액 납부 시에는 지속적 관세 증가 및 한국과 다른 품목분류로 인해 한-인도 CEPA 활용 애로 발생

#### 4) 분류사례

대다수의 기업이 '차체 부분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제 8708.99 호로 분류하여 통관을 진행하였음. 그러나, 최근 DRI에서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제 8708.29 호를 주장함에 따라 추징되는 경우 발생

| HS   |    |    | 품명   | 기본  | 한-인도 CEPA |
|------|----|----|--|-----|-----------|
| 8708 |    |    |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           |
|      | 2  |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including cabs) :             |     |           |
|      | 29 | 00 | <u>Other</u>   | 15% | 비대상       |
|      | 9  |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     |           |
|      | 99 | 00 | <u>Other</u>   | 15% | 5%        |

| 제 8708.29 호 분류 가능한 차체 부분품 예시  |  |
|---|--|
| Roof 부분품  | Door 부분품   |
|  |  |

#### [KPMG 의견]

-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을 통한 품목분류 확인

- 인도 수출 前 인도세관으로부터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받음으로써 인도에서 판단하는 HS코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 서류를 보관하여 추후 변경의 위험을 방지 필요
  - 인도 수출 後에도 세관조사, 인도 국세정보국(DRI) 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dvance Ruling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편되었으므로 이슈 발생 전 검토 필요
  - 만일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한국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거나 해외 품목분류 사례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품목분류 진행 필요
- 인도 국세정보국(DRI)의 관세조사 피해 최소화
- 인도 국세정보국(DRI)에서 요청하는 금액에 근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및 HS 협약에 의한 품목분류 확인 필요
  - 인도 수입신고 시 경합 가능한 HS코드 및 WCO의 품목분류 사례 등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여 품목분류 분쟁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 필요
  - 인도 국세정보국(DRI)는 자료 수집 및 담당자 소환 및 심문을 통해 관세조사를 진행하므로, 소환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



# Key Contacts

## 삼정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http://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